

| 보 도 참 고 자 료 | | | |
|---|-------|------------------------|---|
|  | 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담당 부서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유승광 과장 / 손삼기 팀장 / 정윤환 사무관 044-201-6860 / 7721 / 6875 |
| |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 양영철 과장 / 한상훈 팀장 063-280-4170 / 4186 |
| |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김길범 과장 / 김태현 팀장 064-710-6080 / 3111 |
| | | | 배포일시 |

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_{2.5})의 일평균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 단계 |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
|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
| 주의 |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mu\text{g}/\text{m}^3$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 경계 | 2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mu\text{g}/\text{m}^3$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 심각 | 4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mu\text{g}/\text{m}^3$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50 $\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③ 내일 75 $\mu\text{g}/\text{m}^3$ 초과(매우나쁨) 예상

-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사·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 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행동 권고.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정윤환 사무관(☎ 044-201-68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01 차량은 2부제.
가까이는 걸어서, 먼거리는 대중교통으로!



02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03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04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05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04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05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